의안번호	제748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			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4일			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748 제출연월일: 2024년 10월 24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,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혁신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(안 제5조)
- 시설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- 시설의 주차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- 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업수행의 위탁과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및 제 11조)
- 3. **의안전문** : 붙 임
-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- 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, R&D(연구개발),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·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치)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267에 둔다.
- 제3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
 - 2. 창업활동 지원
 - 3. 기업 관련 회의, 세미나, 전시회 등
 - 4.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
 - 5.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 사업
- 6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(사용허가)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.
 -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5조(사용료) 제4조에 따른 사용료는 「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 9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.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관리

비용은 따로 부과한다.

- 제6조(사용료의 감경) 도지사는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 제7조(사용의 제한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
 - 2.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
 - 3.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8조(주차관리) 도지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9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·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와 위·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위탁계약의 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

- 3. 그 밖에 위 · 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11조(관리·운영 지원)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, 관리비 수입, 시설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며,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·감독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,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, 시정명령,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 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 - 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더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・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 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위 치 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2-2

○ 면 적 : 연면적 3,640㎡ / 부지면적 3,830㎡ (지하1층, 지상4층)
○ 주요시설 : 공유오피스, 회의실, 로비, 휴게음식점, 부대시설 등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관리 운영 위탁비

- 위탁사무 : 혁신지원센터 관리 · 운영, 각종 세미나 및 회의 유치 · 개최 · 홍보 등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9조(관리 · 운영의 위탁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관리 · 운영 위탁

나. 추계 결과 : 총 12억 원 요인 발생(5년 간)

※ 오창과학산단 혁신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방안 참고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임대료 등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출	224,928	235,260	244,174	249,724	255,401	1,209,487
민간위탁금	224,928	235,260	244,174	249,724	255,401	1,209,487
재원 조달	224,928	235,260	244,174	249,724	255,401	1,209,487
임대료 등	151,888	231,556	284,669	291,557	291,558	1,251,228
도비	73,040	3,704	-40,495	-41,833	-36,157	-41,741

6. 작성자 : 투자유치국 산단관리과장 김두환